제56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

2024. 5. 10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‘24. 5. 10. (금) 16:00 ~ 18:00

○ 출석위원(12명)

- 민간 위원장 (주재)

- 민간위원 : 권남훈, 박익수, 안완기, 우태희, 윤명오, 이인호, 조원동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중기부, 공정위, 법제처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①	2024-179	과기정통부	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	보고안건
②	2024-180	금융위	혁신금융 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	보고안건

Ⅲ. 회의 결과

1. (보고)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(과기정통부, 2024-179호)

□ 보고내용 (요약)

○ (**현황**) '19년부터 총 35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**219건(임시허가 70건, 실증특례 149건)의 규제특례** 부여('24.4월기준)

* 위원장 : 과기정통부장관 / 정부위원 **7인**(산업·복지·국토·금융위 등) + 민간위원 **13인**으로 구성

○ (**대표사례**) **모바일 전자고지 관련**(카카오, 네이버, 이통3사 등 17개, '19.2.14)

- (**사업내용**) **행정·공공기관, 민간기관**이 **종이·우편**으로 안내하던 각종 **고지**를 **모바일** 알림·메시지 등을 통해 **통지**하고 **확인**하는 서비스
- (**규제특례**) **주민번호**를 **연계정보**로 **변환**하여 **모바일 고지**할 수 있도록 **임시허가** 부여(「**정보통신망법**」)
- (**사업실적**) '23년 4분기 기준 **누적 5억 건** 돌파('23년 1억 8천만 건)

○ (**향후계획**) **신산업 활성화 등에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**하고, **법령정비를 통해 규제혁신 성과창출 가속화** 추진

- (**법령정비 지원**) 법령정비가 필요한 경우, 법령개정에 필요한 **핵심데이터 사전 협의 및 법령정비안 제시**
- (**제도개선**) **법률 개정**이 **지연**되더라도 **임시허가 지정기업**이 **안정적**으로 **사업**을 **영위**할 수 있도록 **법률 개정**(「**정보통신융합법**」) **추진**

□ 논의사항

○ 개정 「행정규제기본법」이 시행('24.1월)된만큼, **규제특례 심의기한 규정**이 지켜질 수 있도록 **심의지연 방지 노력**을 **강구**할 필요

○ **4년의 규제특례 기한**이 **임박한 사업**은 조속히 **법령정비** 추진

□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접수

2. (보고) 혁신금융 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(금융위, 2024-180호)

□ **보고내용 (요약)**

○ (**운영현황**) '19.4월 이후 **303건**의 서비스가 **혁신금융심사위***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**혁신금융서비스**로 **지정**('24.3월)

* 금융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 9인, 학계·법조계 전문가 등 위촉직 민간 위원 15인으로 구성

○ (**제도개선**) **정책환경의 변화**, 규제샌드박스 **제도의 성숙** 등을 종합 고려하여 **제도 개선 노력**도 **병행**('24.4월)

- 「**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 개편방안***」을 마련하여 **신청인의 편의성**을 제고*하고 **심사의 내실성** 강화('24.4월)

* ①'수요조사' 종료, ②신청서 제출기한 사전공고, ③신청서에 대한 보완·반려절차 신설, ④혁신소위를 2개분과로 분할운영(❶산업·소비자, ❷자본·핀테크)하여 내실화

○ (**향후계획**) **「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 개편방안」 적용**('24.5월~),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을 통한 **제도개선, 현장소통 강화** 추진

- (**제도개선**) ①**법령정비기간 연장**(1.5년→2.5년) 및 ②공동위원장 체제(민간·금융위)로 **혁신위 개편** 추진(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」 개정)

- (**현장소통**) '**찾아가는 금융규제샌드박스 간담회**' **정례화**(월1회) 등을 통한 현장의 건의사항 청취

□ **논의사항**

○ 규제샌드박스 지정 이후에도 **과도한 부가조건**으로 **서비스 출시에 어려움**이 있는 경우도 발생

- **사업개시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**의 **부가조건** 부여가 필요

□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접수